

## 두바이 1998년 제4차 관세법 요약문

이 법은 1998년 제4차 두바이 관세법으로 두바이 항구의 원활한 교역을 위하여 항구와 세관이 관할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, 세관금지 및 제한물품에 대한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. 이 법에서는 항구와 세관의 지정절차와 기간에 따라 세관당국의 관할 하에 지정세관통로를 통해서만 모든 물품을 수출입, 통관시킬 수 있으며, 항구와 세관이 내부의 가격산정전문가가 제시한 이유로 과세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는 가격산정예정이며, 두바이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고 수출일자이전 또는 이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된 당해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물품증서에 따른 과세로 한다는 내용과, 모든 세관수속에서 세관과 상업부문 간 단순, 평등, 투명, 상호호혜의 원칙을 준수하며 항구와 세관은 이를 위하여 첨단방식과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. 또한 자유지역의 수입물품 또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며, 물품수취인이 자유지역 내 영업을 허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항구와 세관 또는 관할당국이 자유지역운영에 관하여 허용한 경우에만 자유지역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, 항구와 세관은 이 법령과 그 시행결정, 시행령, 시행법규를 위반한 범죄조사, 이 범죄를 자행한 자에 대한 색출, 필요한 정보와 증거수집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. 또한 기타 항구와 세관업무, 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의 권한과 업무, 금지물품과 제한물품, 물품의 일시 수출, 일시 반입, 재수출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.